# 탄 원 서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과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시민 탄원서

| | |
|---|---|
| **수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 |
| **피고인**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
| **사건번호** | 2026고합575 |
| **대상 사건** | 내란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 |
| **탄원 취지** | 공소사실의 엄격한 증명 및 무죄 판단 요청 |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께.

저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충분한 증거에 따라 가려지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이 글을 올립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가안보를 맡았던 고위공직자의 판단과 행동을 엄정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엄정함은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지시하고 인식했는지, 그 행위가 법률이 정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건기록 전체를 직접 확인한 당사자도, 피고인의 인품이나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확인되지 않은 미담이나 단정적인 무죄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공개된 재판 경과에서 드러난 쟁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심으로 간절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이번 사건의 행위를 별도 항소심 판결과 구별하여 주십시오.

피고인은 2026년 8월 19일 별도의 국회 증언·정치관여·증거인멸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상고심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다른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심리 중인 사건은 그와 구별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선 판결의 내용과 불리한 사실관계를 가볍게 보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앞선 사건에서 인정된 인식이나 행위를 이번 공소사실의 고의와 기여 여부에 그대로 대입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기의 사실이 서로 관련되더라도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미 유죄 판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혐의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께서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지시와 대외 설명을 각각 분리해 피고인의 행위 시점, 관여 정도, 적용되는 법률을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2. 내란의 목적과 중요한 임무의 수행은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해 주십시오.

형법 제87조 제2호는 내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넘어,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별 행위가 왜 중요한 임무의 수행에 해당하고 내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국헌문란 목적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이 특정한 결론을 미리 뜻한다기보다, 중대한 범죄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더욱 구체화하려는 절차라고 이해합니다.

부디 피고인의 지시 내용, 당시에 알고 있던 정보, 직원들의 실행 과정, 행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서로 연결해 살펴주십시오. 목적과 인식은 관련 정황 전체로부터 판단할 수 있겠지만, 불명확한 지시 한마디나 직책의 무게만으로 그 존재를 추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3. '을지연습대로 하라'는 지시의 의미와 실제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특검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 매뉴얼대로 조치하라'는 취지로 말해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시가 통상적인 비상상황 대응을 가리켰는지, 아니면 위법한 조치의 실행을 의도한 것인지는 발언 문구만이 아니라 그 전후 사정과 실행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열린 정확한 시간, 누가 어떤 보고를 했는지, 지시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 뒤 어떤 부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구분해 주십시오.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한 검토였는지, 외부기관과의 협조나 특정인에 대한 조치로 이어졌는지에 따라서도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시가 외형상 일반적인 표현을 취했더라도 관련 증거에 비추어 위법한 목적과 실행이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그 연결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지시의 포괄적인 표현만을 근거로 중대한 범죄의 수행을 인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 4.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대외 설명과 내란 종료 시점을 구별해 주십시오.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가안보실로부터 전달된 자료가 국정원 경로로 번역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 등에 설명된 행위를 내란 가담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설명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았고, 누가 작성·승인·전달했으며, 피고인이 어느 범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개 보도에 따르면 내란의 종료 시점을 두고 종전 내란특검은 12월 4일, 2차 종합특검은 12월 14일로 보는 견해 차이가 제기되었고, 10월 3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내란이 언제 끝났는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의 어느 시기에 어떻게 기여했다는 것인지는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적절성이나 다른 법률상 책임을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이 내란의 중요한 임무 수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설명의 내용·의도·전달 경로와 범행에 대한 구체적 관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행위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빠짐없이 검토해 주십시오.

### 5.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도 별도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권한이 어떤 범위에서 행사되었는지, 어떤 구체적 지시나 조치가 문제 되는지, 법률이 정한 금지행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독립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무상 권한이 있다는 사실, 그 권한이 부적절하게 행사되었다는 비판, 형사법상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서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피고인이나 실무 담당자가 했다고 주장되는 행위가 모두 피고인 자신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이 그 목적과 내용을 알고 통제했는지, 객관적 기록으로 어떤 연결이 확인되는지에 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개별 지시와 책임이 충분히 확인된다면 그 사실도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 결어. 지위가 아니라 증명된 행위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 국가안보를 맡았던 책임자의 의무가 무거운 만큼, 그 사람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판단 역시 엄격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불리한 증거가 있다면 외면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하고 불리한 증거를 함께 살펴, 피고인 개인의 행위와 법률상 범죄의 요건이 어디에서 만나는지 충분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심리 끝에 조태용 전 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다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사건의 중대함만큼이나 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신중함을 믿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원인 성명 : _____

주소 : _____

연락처 : _____ 생년월일: _____

서명 또는 날인 : _____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 귀중